##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3

발의연월일: 2020. 7. 30.

발 의 자:정일영·김수흥·허 영

김경협 • 박상혁 • 한병도

이탄희 • 윤관석 • 김교흥

허종식 • 박찬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주택 취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반면, 싱가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금지, 허가제나 취득세의 중과 등을 규정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 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 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 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5항 신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 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라산출된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추가 과세의 구체적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제11조제5항에 따른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가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생 략) < <u>신 설&gt;</u>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출입국관  |
|  | 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br>인을 말한다)이 취득일부터 6<br>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br>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br>해당 주택에 상시거주(「주민<br>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br>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
| <u>&lt;신 설&gt;</u>                                 | 마고 계속하여 기구하는 것들<br>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작하지<br>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br>따라 산출된 세율에 100분의 2<br>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br>⑥ 제5항에 따른 추가 과세의<br>구체적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br>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br>(생 략)<br><u>&lt;신 설&gt;</u> | 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제11조         제5항에 따른 상시거주를 하지  |

아니하여 취득세 추가 납부 대 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